



## 201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

# 201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(개정)

※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해당 법령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2012. 5. 14.



이 기준은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보급하는 주택용 등 58.14kw이하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.

### 1 | 보급대상 보일러

□ 신·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177호, '11.09.09)에 따라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(58.14kw이하)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한다.

- ① 열효율 87%이상일 것
-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
  -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,
  - 실제 설치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목재펠릿 보일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구성인원 : 5명 이상의 내·외부 전문가
- (심의내용) 인증기준 통과여부 및 보일러 가격, 사후관리 계획, 내구성, 품질개선 노력, A/S 이행사항, 업체건실성 등
- (심의결과) 위원회 합의를 통하여 보급업체 등록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며, 보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산림청에 등록, 홈페이지 공지
  - 심의결과는 합격, 불합격,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
  - 홈페이지 공지는 인증기준에 따른 성능검사표, 부품의 모델명·제조사 및 기타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

## 2 참여 자격 및 보급현황 자료 제출

□ 보일러 보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보급대상 보일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“직접생산증명서” 제출 가능 업체에 한함, 단 대기업인 경우에는 “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공장등록증, 건축물대장, 생산시설리스트, 현황사진<전경, 시설근경 등>”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림청 또는 목재펠릿 보일러 심의위원회 등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OEM<sup>1)</sup>, 수입업체 등 직접 생산을 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참여 불가

- ② 보일러 하자보수,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제조사에 있음

- 설치, 대금청구, A/S 및 보증, 제조물 책임,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

- 다만, 보일러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

\* 불법행위 적발시 영업점, 영업사원,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

□ 보일러 제조업체는 다음 서식에 따라 매분기별 보일러 보급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“목재펠릿 사후관리모니터링 위원회”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\* 신고 미이행시 “기타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”로 적용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 조치 가능

○ 모델별 설치 수량 \*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

제조사	모델명	보급단가 (원)	설치 수량			비고
			누계	전분기( /4) 까지	금 분기 ( /4)	

○ 농가별 설치내역(금분기) \*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

모델명	금액(원)	설치 농가			
		성명	주소	연락처	자부담금(원)

1)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일부 부분을 “아웃소싱”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자로 인정가능, oem의 경우 품질인증도 불가

## 3 보일러 보급 기준가격 결정

□ 보일러 제조회사는 보급대상보일러 등록 신청시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원가계산은 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(계약예규 2200.04-160-9, 2011.05.13.)에 의한 “제조원가계산 방식”을 적용하며,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 등으로 구성

\*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(신설)

-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

□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업체별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.

- ① 산림청 용역 결과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높으면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보급기준가격으로 결정

- ② 산림청 용역결과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으면 산림청 용역가격이하로 협의 결정(개정)

\* 산림청 용역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10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(신설)

- ③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(신설)

### 【 원가계산용역기관 】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9조 및 「예정가격작성기준(계약예규 2200.04-160-9,2011.05.13.)」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- 정부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
- 「민법」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
-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

□ (기준가격의 조정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격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

#### 4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기준

- 보조금 지급대상은 보일러(본체 및 연통, 연료통)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한다.
  - \*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(분배기)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,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
- 보조금은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보조금은 70%로 한다.
  -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내,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이내
  - 보조금은 70%(국고 30%, 지방비 40%), 자부담은 30%로 함.
  - \* 기준단가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5 보일러 등록 신청

- 2012년 보급사업 대상 보일러 등록 및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- '11. 12월부터 수시 접수가능, '12년도 7월1일부터 홀수월만 접수
  -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되 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개월이내에서 연장 가능
- 등록 신청시 【붙임1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당연 탈락으로 처리한다.

#### 6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공개(신설)

-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접수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  - 기 펠릿보일러를 보급 받아 설치한 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
  - 1개 마을(행정구역상 “리·동”단위)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-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선정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  - \*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

#### 7 지원대상자의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(신설)

-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.
  -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
  -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
  - 자부담금(총액의 30%)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
  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

#### 8 표준계약서의 사용(신설)

-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와 지원대상자는 붙임9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.
  -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.

#### 9 제조사의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의 납부 방법(신설)

- (계좌등록제 운영)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.
  -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까지 가능
  -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
- (자부담금 납부)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## 10 열효율 개선명령

- 품질보증 기간내에 열효율이 80%미만임이 발견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“열효율 개선명령”에 따라야 한다.
  - 열효율 저하에 대한 민원발생시 “사후관리모니터링(전문기관에 시험의뢰)”을 통해 보일러의 열효율을 시험후 조치
    -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
    - \*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(지식경제부고시 제2011-241호)의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최저 효율기준(80%) 적용
  - 개선 명령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
## 11 부품 개선명령

- 보급대수의 3%이상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“부품 개선명령”에 따라야 한다.
  - 보급실적대비 동일하자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3%이상 발생시 조치
    -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
  - 개선 명령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
## 12 제품 교환 및 환급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환급을 하여야 한다.
  - \* 소비자분쟁해결기준(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-54호)에 따른 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소비자분쟁해결기준”에 따른다.
  -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  - ②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(3회째)한 때
  -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
  -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(5회째)한 때
  -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(환급)
  -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%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

## 13 자격정지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.
  - ①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, 단 기술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
  - ② 제품 교환 및 환급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
  - ③ 3일 이내 하자보수 미이행시
  - ④ 과장광고를 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위반, 1일 이상 a/s센터 연락 불가, 보급현황 신고 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
  - ⑤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
  - ⑥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

## 14 등록 취소

-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,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① 자격 정지 후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
  - ②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5회 이상인 경우
  - ③ 산림청(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 포함)이 실시하는 설치·사후관리 모니터링결과 제조·설치 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
    - \* 기술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시한을 명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
  - ④ 자부담을 받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

- ⑤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·설치업체
  - \* 다만,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써 설치 농가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
- ⑥ 등록신청서류,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

- 보급사업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효율 및 부품 개선, 제품 교환 및 환급,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.
  - 이 경우 산림청 또는 설치·사후관리 모니터링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여부 결정

**【등록취소 절차】**

○ 문제발생 → 조치요청(2회) → 최후통첩(1회) → 청문 또는 의견진술(최후통첩후 7일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) → 등록 취소

## 15 소비자 교육 · 안내 및 A/S 등 사후관리

- 보일러 제조사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, 보일러 또는 보일러실에 부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A/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농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“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%)”
  -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
  -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(3년)
  - ④ 보일러 설치·운영 세부사양서
  -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(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)
  -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(업체명, 연락처 등)
  - ⑦ 소비자안내문(붙임6) 및 펠릿 구매처 정보(붙임7)
- 보일러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- ① 허위·과장광고,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, 부당행위
  - ②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

## 16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

-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사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서류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한다.
  -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(사본), 청구서, 사용인감계, 사업자등록증(사본)
  - 설치완료 확인서(사진 첨부 : 전면, 배관연결 상태 등)
  - 자부담 수취를 증빙하는 서류(입금계좌 사본, 무통장 입금표), 소비자 교육 증빙서(붙임6)
    - \*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(자부담 30%)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
  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“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”, 『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』의 “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”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.
    - \*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

## 17 기타 참고사항

- 보급 대상은 농산어촌 지역(읍·면 및 농촌형 동 지역 포함)에 소재하는 주거가 가능한 건물로,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다만,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,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, 제품 교환 및 환급,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.
  - 심의 서류로 제출한 것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
- 보일러 목표수명은 장기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하되, 2012년부터 보급되는 보일러는 최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.
  - ※ 보일러 등록서류에는 현재 사실을 바탕으로 목표수명 기재

## 등록신청서 제출서류

- ① 등록신청서 1부.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③ 업체현황서.
  - 소재지, 제조공장 현황, 직원현황, 자격증 소지자 현황, 재무상태(자산·부채 현황) 등
  - 재무상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
- ④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.(실적이 있는 경우)
- ⑤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(중소기업에 해당).
  - \* 단, 대기업인 경우에는 “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공장등록증, 건축물대장, 생산시설리스트, 현황사진<전경, 시설근경 등>” 제출
- ⑥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(해당시)
  - ISO인증업체, KS표시허가업체,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, Q마크획득업체,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, 특허 등
- ⑦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받은 보일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시험성적표 및 저위발열량기준 열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)
- ⑧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등
  - 설계도면 : A3 용지로 제출
  - 보일러 목표수명 계산서, 목표수명 설정 근거 서류 1부
    - 주요 자재 내구성 설명서를 통해 목표수명 설명 가능
    - ※ 연소실, 청소장치, 연관 등의 내열성·내부식성, 스크류, 모터류 등 부품의 수명 등
  - 원가계산서 :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(\*전산파일 별도 제출)
  - 부품현황서 : 부품제조사, 원산지, 모델명 등
  - 사진자료 : 보일러 본체(전면, 측면, 후면) 및 주요부품(버너, 점화장치, 연료공급장치, 청소장치, 제어장치, 실내조절기)
    - ※ A4용지 세로로 1면에 2장씩 인쇄하여 제출(\*전산파일 별도 제출)
- ⑨ 보일러 설치·운영 요령 1부
- ⑩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(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)
- ⑪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%) 사본 1부.
- ⑫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.
- ⑬ 품질보증서(3년) 사본 1부.
-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.

##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서

업체명				제조형태			
사업자등록번호				업태·종목			
업체소재지				연락처			
재무상태	자산	원	부채	원	자본	원	원
모델명				보일러목표수명	년		
품질인증번호				시험검사기관			
보급희망가격 (제세비용 포함)	총 액		보 일 러		축 열 조		
	원		원		원		
원가계산용역 기관산출원가	원		원가계산용역기관				
	*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						
열 효 율	진발열량기준	%	연료소비량	kg/h			
배기가스온도차	℃		잔재중미연소분	%			
점 화 기	점화소요시간	분	정격전압	kw			
연료 공급 장치 모터	제 조 사			모델명			
	최대출력	kw		정격전압	kw		
청소장치	청소장치 부착 장소, 구동원리 등 간략히 기재						
상기 제품을 산림청 보급사업에 참여코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합니다.  2012년 월 일 등록자 : 000000(대표 0000)(인)							
<b>산림청장 귀하</b>							
<붙임>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② 업체현황서 ③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(실적이 있는 경우). ④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 ⑤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(해당시). 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서류 1부 ⑦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. ⑧ 보일러 설치·운영 요령 1부 ⑨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(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) ⑩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0%) 사본 1부. ⑪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. ⑫ 품질보증서(3년) 사본 1부. ⑬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.							

## 업 체 현 황 서

업체명		회사형태	주식회사, 합자회사	
소재지		연락처		
대표자		연락처		
사업자등록번호		업태·종목		
보일러 생산형태				
공장면적	㎡	소유관계	(소유) (임차)	
재무상태	(자산)	(부채)	(자본)	
주요사업내용	보일러제조 이외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기재			
전년도 부가세 납부액	<i>보일러 관련 부가세 납부액이 표시되도록 기재 요망</i>			
전년도 주요 실적	<i>보일러 관련 위주로 실적 기재요망</i>			
종업원수				
보일러제조·설치 관련 자격증소지자현황	(자격증명)	명		
	(자격증명)	명		
특허, 인증 등 보유현황				
“기타 업체 현황에 대한 설명”				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				
2011년 월 일				
대표자 (인)				
필요시 증빙서류 첨부				

## 주 요 부 품 현 황 서

부품명	생산·판매자 (연락처)	원산지	재질·규격· 모델명	품질·성능
연소실 벽체 (금속부분)	OO 철강 (042-000-0000)	한국	9US???	내열강도 ?? 등
버너			금속, 주물 등	
연소기청소장치				
연관청소장치				
연료공급스크류				
연료공급 모터				
공기주입 모터				
컨트롤				
실내온도조절기				
점화장치				
역화방지장치1 (정전시 작동)				
역화방지장치2				
축열조(온수통)				
.....				

- ※ 부품현황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예정이니 품질, 성능, 구동원리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
- ※ 위에 정한 부품은 반드시 기재하고, 기타 부품은 업체 자율. 다만, 해당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인 경우 해당 부품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명시

##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심의 평가서(안)

<p>* 심의기준</p> <p>①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, 제반서류 미제출 등은 당연 탈락</p> <p>②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 협상 필요</p> <p>③ 붙임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</p> <p>④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</p>
--

심의대상 업체 및 대상보일러 :

o 보일러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: 적정, 가격조정 필요

심 의 항 목	배 점	심의위원 점수	비 고
합 계	100		
<b>1. 내구성</b>	<b>30</b>		
1) 적정	30		
2) 보통	20		
3) 미흡	10		
<b>2. 사후관리계획</b>	<b>30</b>		
1) 적정	30		
2) 보통	20		
3) 미흡	10		
<b>3. 품질개선노력</b>	<b>20</b>		
1) 적정	20		
2) 보통	10		
3) 미흡	5		
<b>4. 업체의 견실성</b>	<b>20</b>		
1) 적정	20		
2) 보통	10		
3) 미흡	5		

2012. .

o 평가자 소속 :

성명 : (서명)

제 조 사 명

## 소 비 자 안 내 문

1. 우리회사의 목재펠릿 보일러는 열효율이 ( )% 이며, 연료비가 연탄과 비교할 때 약 ( )% (비싸고 또는 싸고), 경유와 비교할 때 약 ( )% (비싼 또는 싼) 것으로 평가 됩니다.
2. 목재펠릿 보일러는 청소를 잘 해줘야 하고, 20kg의 펠릿 연료를 넣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
3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.
  - 가. 청소장소 1 : 대상, 주기, 요령
  - 나. 청소장소 2 : 대상, 주기, 요령
  - 다. 청소장소 3 : 대상, 주기, 요령

.....
4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는 1등급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.
5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.
  - 가. 000 할 때
  - 나. 000 할 때
  - 다. 000 할 때
6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  - 가. 지역 A/S 업체 :
  - 나. 본사 A/S 신고 접수 :
7. 다음과 같은 경우는 A/S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가.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  - 나. 1등급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



## 목재펠릿 판매대리점(33개, '11.9.29기준)

도 별	기 관	주 소	연 락 처
경기 (7)	목재유통센터	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번드레길 70	1588-1398
	연천군산림조합	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608-2	031-834-0071
	가평군산림조합	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13-1	031-582-4570
	강화군산림조합	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14	032-934-0789
	양평군산림조합	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38	031-772-6144
	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	경기도 화성시 무송동 450-1	031-356-5737
	그린에코(주)	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7-2	031-647-3456
강원 (5)	강원도지회	강원도 춘천시 만천로 88	033-255-5458
	목재유통센터	강원도 동해시 망상로 156	033-530-4145
	평창군산림조합	강원도 평창군 후평리 11-1	033-333-4121
	일도바이오테크	강원도 동해 구호 229-8	033-521-9490
	우주그린산업	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357	033-563-6533
충북 (4)	충북도지회	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도로 56	043-276-4602
	단양군산림조합	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4	043-421-3511
	신영E&P	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146-1	043-241-7878
	풍림	충북 괴산군 방축리산 16	043-836-6663
충남 (3)	충남도지회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로 49(2층)	042-622-1391
	연기군산림조합	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대로 1007	041-868-2132
	예산군산림조합	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87	041-333-2502
전북 (4)	전북도지회	전북 전주시 덕진구 명주길 46	063-244-5101
	익산시산림조합	전북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26	063-843-1911
	남원시산림조합	전북 남원시 용정동 71번지	063-631-2014
	무주군산림조합	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50	063-322-2314
전남 (4)	전남도지회	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로 837	062-954-0071
	강진군산림조합	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0-37	061-433-3399
	순천시산림조합	전남 순천시 낙안면 목촌리 81-8	061-755-3307
	SK임업(주)	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700-7	061-372-2870.2
경북 (3)	경북도지회	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56	053-957-7990
	영덕군산림조합	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-22	054-732-8300
	포항시산림조합	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52-14	054-247-4654
경남 (3)	경남도지회	경남 창원시 금산길 15	055-284-3431
	산청군산림조합	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287	055-973-7769
	바이오삼삼(주)	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538-16	055-855-3334

※ 수시로 현행화 하여 활용

## 소비자 교육 이수증

1. 보일러 모델명 : 산립보일러 AB-01- “소비자가 자필로 기재”
2. 열효율 : 87 %
3. 연료비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은 정도로 평가된다.
  - 연탄대비 : 00% 비싸다. (또는 싸다)
  - 경유대비 : 00% 비싸다. (또는 싸다)
4. 목재펠릿 보일러는 2가지의 불편함이 있다.
  - 첫째 : 청소하기
  - 둘째 : 연료넣기
5. 보일러 청소할 곳은 다음과 같다.
  - 연소기, 연료통, 연통.....
6. 다음과 같은 경우는 A/S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.
  - ( 자부담 )을 하지 않은 경우
  - ( 1등급 )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

위와 같이 교육받았습니다.

2012년 월 일

소비자 : (서명)

※ 소비자가 반드시 자필로 답을 기록하고 최종 서명해야 함

### < 계약 일반조건 >

## [주택용]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

계 약 당사자	매수인	홍길동 (인)	생년월일		년	월	일		
			주 소						
			연 락 처	TEL					
	매도인	(주) 000 (인)	대표자	성 명					
				사 업 자					
				등 록 번 호					
주 소									
연 락 처	TEL								
	H·P								
	A/S								
계 약 내 용	모델명				수량				
	매각금액	총 액	계약금액(자부담금) * 총액의 30%	잔액(보조금) * 총액의 70%					
	설치장소 (주소)								
	설치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	
	계약 조건	일반	*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						
	특수								
입금 계좌 (산림청 등록 계좌)									
첨부서류		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“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%)”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(3년) ④ 보일러 설치·운영 세부사항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(자부담)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금 계좌 사본							

\*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
\*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

제1조(통칙)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“매수인”에게 납품 설치한다.

제2조(대금지불방법) ①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( )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( )에 입금하여야 한다.

\* 매수인은 계약금액( )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( ) 서명)

② 매수인은 잔액( )을 해당 시군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.

\* 매수인은 잔액( )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( ) 서명)

※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

③ “매수인”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\*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( ) 서명)

제3조(설치와 인도)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 “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”과 에너지관리공단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(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및 관리요령)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“매도인”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제4조(사후관리 및 A/S)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“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”에 따라 무상A/S와 유상A/S를 구분하여 성실히 A/S를 하여야 한다.

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약의 해지)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의 환수)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,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.

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.

\*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(서명)

\*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(서명)

제7조(사용자 교육)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\*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(서명)